



# 환경관리 **질의응답**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악취배출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신고

**Q**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악취배출신고를 실시하였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였는데도 이러한 경우에도 별도의 가동개시신고를 실시해야 하는지요? 관련철차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A** 악취방지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당해 악취배출시설의 가동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가동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건설폐기물중 유리섬유 보온재(페섬유) 분리발주 여부

**Q** 당초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100톤이상)을 분리발주 하였으나 시설공사 내역에 설비 보온재(유리섬유/페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파악, 이 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 발주된 폐기물 물량에 포함하여 재계약해야 하는지요?

**A** 당초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를 한 건설공사현장에서 추가 발생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 변경신고는 배출자(분리발주 대상사업은 발주자)가 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 하여야 하는 경우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거나 별도의 발주를 하여야 합니다.

## 폐가스 소각시설에 대하여

**Q** 대기 방지시설이면서 배출시설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폐가스 소각시설) 용량이 100kg/hr이상일 경우에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대기배출시설인 인쇄건조시설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VOC 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을 방지시설로 설치할 경우 폐가스 소각시설(100kg/hr) 이상일 경우에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허가)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가스 등을 소각하는 시설의 시간당 소각능력이 100kg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해당되나 시간당 100kg미만일 경우는 방지시설에만 해당될 것입니다.

## 인쇄건조시설 대기신고 여부

**Q**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대기배출시설로 인쇄건조시설이 추가되어 법시행전 시설에 대하여 12월 31일까지 설치신고를 득해야 하는데, 이미 대기필증상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악취 등의 사업장오염도 저감을 위해 다른 대기배출시설의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인쇄건조시설을 연결처리하고 있어 대기신고한 경우라면) 금번에 설치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지요?

기존 신고시 인쇄건조시설의 배출오염물질인 THC에 대하여는 신고가 되어있지 않는데, 대기신고필증에 등재되어 있다면, 자가측정에서만 THC를 추가로 측정하면되는지요? 그리고, 인쇄건조시설에서 사용원료는 그라비아잉크와 유기용제류인데 이때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규제치가 있는 THC만 잡으면 되는지요?

**A** 그라비아 인쇄시설이 대기배출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동 시설이 대기배출시설이 아닌 악취배출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제270호, 2007. 12. 31> 제6조(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동법 제2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자가측정은 동 시설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염물질 중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측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성검토 면적규모**

**Q** 보존 관리지역에서 일반주택을 신축하고자 7000평방미터를 개발행위 및 산지협약의 건축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위 사항이 환경성검토 대상인지요?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환경성검토 규모도 알고 싶습니다.

**A** 사전환경성검토는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 이라 함)을 받아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규모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의 가목 내지 아목에 정하여진 규모이상인 경우 대상이 되며, 보존관리지역은 사업계획면적이 5,000㎡ 이상, 생산관리지역은 7,500㎡ 이상 및 계획관리지역은 10,000㎡ 이상인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임.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자료정책 카테고리> 자연보전> 국토환경관리에서 자료목록 39, 49질의회신 사례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폐기물 처리관련**

**Q** 건설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토목공사현장입니다.

1. 폐지, 고철을 배출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대상이 아닌데도 운반, 처리하는 업체(고물상)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2. 작업자들이 사용하고 버린 5ton이상의 폐목장갑은 생활폐기물인지? 아니면 배출자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인지?

3. 석탄재를 현장내에서 성토재로 재활용 하는 경우 지정폐기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폐기물용출시험 및 오염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토양오염공정시험을 하여 성분분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4. 착공전 임목폐기물 100ton 위탁처리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으나 공사도중 석탄재가 새로이 5ton 발생되어 현장에서 재활용 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인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인 경우 신고당시에 배출되는 아니한 폐기물이 1일 평균 300kg이상 추가로 배출시 변경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장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A** ○ 고철, 폐지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석탄재를 복토용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성분분석을 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4호에 사업장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취지를 감안하여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